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8-32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3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,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 -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
 -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
 -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
 -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
 -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- 지원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 -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
 -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
 -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
 -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·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지원신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 -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
 -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 결정 가능.
- 지원결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 - 지원대상자,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

- 지급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 - 원칙 : 「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 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- 제정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비용추계서(붙임3)
- 사전예고(결과) : 생략
 - 근거 :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
“당해 자치법규안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”
 - 사유 :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,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
- 기타 참고사항
 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 불임 1 >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,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재난” 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- ② “재난피해자”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.
- ③ “생활안정지원금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④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.
- ⑤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재난피해자 등 지원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자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.

1.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
2.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
3.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
4.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
5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5조(지원내용) ①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
1.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
2.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
3.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
4.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·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지원내용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결정)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시 대책본부 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지급방법)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「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「안산사랑 상품권」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지원중지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소득,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

제10조(환수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장 김 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획팀장 채 충 렐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문 준 (행정 2477)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32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. 3. 27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조례의 형식 및 체계를 정비하고,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
-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 및 근거규정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각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각 호로 수정 (안 제2조)
- 시장의 자유적 재량행위가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조문 수정 (안 제4조 및 제5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재난피해에 따른 지원신청, 실태조사, 지원결정 순으로 조례입법의 체계성 정비 (안 제6조 ~ 제8조)
-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단서 조문 신설 (안 제9조)
-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(안 11조)
-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 근거 조항 등 수정 (안 제8조, 제12조)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.

안 제4조제5호 중 “지원이 필요하다고”를 “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외”를 “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“필요하다고”를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”로 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실태조사)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·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(종전의 제7조)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외의 부분)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 제1항”을 “「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15조”로 하며, “시장이 정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(종전의 제8조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(종전의 제10조) 중 “제9조제1호”를 “제10조제1호”로, “환수 할 수 있다”를 “환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(종전의 제11조)중 “시장이 정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 <u>① ~ ⑤</u>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(원안과 같음) <u>1. ~ 5.</u> (원안과 같음)
제4조(지원대상자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	제4조(지원대상자) (원안과 같음) 1.~ 4. (원안과 같음) 5.----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-----
제5조(지원내용) ①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 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 는 제외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(생략)	제5조(지원내용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----. 1. ~ 4. (원안과 같음) 5.-----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----- ② (원안과 같음)
제6조(지원신청) ①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 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 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 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신청)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
원 안	수정안
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제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제 ></p>
< 신설 >	<p>제7조(실태조사)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·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지원결정)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시 대책본부 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8조(지원결정) ①----- ----- ----- 「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----- ----- ----- -----정한다</p> <p>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</p>
< 신설 >	<p>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지급방법)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「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</p>	<p>제9조(지급방법) ----- ----- -----</p>

원 안	수정안
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「안산 사랑 상품권」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. 다만,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제9조(지원중지) (생 략)	제10조(지원중지) (원안과 같음)
제10조(환수)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	제11조(환수) ----- ----- --제10조제1호----- ----- 환수하여야 한다.
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	제12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----- ----- ----- 정한다.